

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업체명			지정번호	
제조장 소재지			전화번호	
변경 사항				
변경 전		변경 후	변경 사유	

「인삼산업법」 제1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									
처리절차		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수, 검토	→	변경 사실 확인	→	변경 여부 판정	→	지정서 작성	→	지정서 발급
신고인		국립농산물 검사기관		국립농산물 검사기관		국립농산물 검사기관		국립농산물 검사기관		국립농산물 검사기관